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6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 군 (계급)	직 렬 (직류)	선발예정인 원	선발 구분				필기시험과목(제1·2차 병합 실시)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국 가 유공자 (보훈청추천)	
공개경쟁임용시험	행정 (9급)	교육행정	290명	260명	26명	4명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선택
		전산	12명	10명	1명	1명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
		사서	33명	30명	2명	1명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선택
	기술 (9급)	보건	21명	18명	2명	1명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공중보건, 보건행정
		공업 (일반기계)	1명	1명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 (일반전기)	2명	2명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 (일반토목)	1명	1명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 (건축)	4명	4명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소계		364명	326명	31명	7명	-	
경력경쟁임용시험	기술 (9급)	시설관리	50명	32명	-	3명	15명	1차: 한국사 2차: 사회
합 계 (공개경쟁+경력경쟁)			414명	358명	31명	10명	15명	

※ 교육행정, 사서 직렬의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 2022년부터 전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조정(표준)점수 제도는 폐지됩니다.

※ 2021년 서울특별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대상 지방공무원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은 2021.3.8.(월)에 공고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당 20문항·100점 만점)

구 분	공개경쟁 임용시험(5과목)	경력경쟁 임용시험(2과목)
필기시험	100분(10:00 ~ 11:40)	40분(10:00 ~ 10:40)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인성 검사 포함)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

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응시연령

시험 구분	계급	응시 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18세 이상	2003. 12. 31. 이전 출생자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18세 이상	2003.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 경력 · 성별

○ **공개경쟁임용시험: 제한 없음**

※ 단,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사서, 전산직렬에 응시하는 사람과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시설관리직렬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라. 거주지 제한(다음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

①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았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도 위 요건과 같으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 거주 기간 합산 요건(3년) 계산 방법은 「민법」제160조제1항을 따릅니다.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 **공개경쟁임용시험**(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이 유효한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하여야 함)

직렬(직류) 및 계급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전산 9급	○ 기 술 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기 타【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9급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하여야 함)

<table>
<tr><th>직렬(직류)
및 계급</th><th>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th></tr>
<tr><td>시설관리 9급</td><td>○ 아래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관리관련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관리관련 <u>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u> ※ 필기시험 합격자 한하여 경력증명서 제출
– 시설관리관련 분야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 시설관리관련 분야 <u>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
※ 필기시험 합격자 한하여 경력증명서 제출
<table><tr><th colspan="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th></tr><tr><td>기 능 장</td><td>전기</td></tr><tr><td>기 사</td><td>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기계분야), 조경</td></tr><tr><td>산업기사</td><td>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기계분야), 조경</td></tr><tr><td>기 능 사</td><td>전기, 기계정비, 조경</td></tr></table></td></tr>
</table>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의 국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등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입니다.

※ **시설관리 관련분야 경력은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u>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u>**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u>【첨부2】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u>**에 따라 반드시 지정한 기한 내에 **<u>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제출</u>**하여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 응시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여 그 기간 동안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세대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또는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 구분 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의 기초생활 보장담당자・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국가유공자(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 요건은 일반응시자와 동일합니다.

○ 국가유공자(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도 원서접수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일반응시자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 해당 자격증 종

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보훈청 추천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은 서울북부보훈지청(☎02-944-92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일반으로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 1】"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임용시험 시행 계획"** 참고

4. 필기시험 문제출제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및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과목별 출제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출제기관	출제과목	공개 여부	문제책 회수여부
위탁 출제	인사혁신처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험과목 中]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	공개	미회수
공동 출제	17개 시도 교육청	위탁출제하지 않는 과목	비공개	회수

○ **위탁출제 과목은 공개하며 시험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고, 위탁출제 하지 않는 시험과목은 비공개이며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합니다.**

○ 사회, 과학, 수학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며, [사회]는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에서 출제됩니다.

○ [행정학개론]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으로 과목명이 변경되었으며, **지방행정이 출제범위에 포함**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4.19.(월) 09시~4.23.(금) 18시 [취소마감일: 4.26.(월) 18시]	제1·2차	필기시험	2021. 5. 24.(월)	2021. 6.5.(토)	2021. 7. 14.(수)
	제3차	인성검사	2021. 7. 14.(수)	2021. 8. 14.(토)	2021. 10. 1.(금)
		면접시험		2021. 9. 10.(금)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 - 시험안내-지방공무원 시험안내”에 공고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성적확인: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1. 12. 31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원서접수사이트(http://edurecruit.sen.go.kr)에서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입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2021. 4. 19.(월) 09:00 ~ 2021. 4. 23.(금) 18:00까지 (기간 중 24시간 접수)

나. 취소기간: 2021. 4. 19.(월) 09:00 ~ 2021. 4. 26.(월)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응시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edurecruit.sen.go.kr) → 「교직원 온라인 채용」 → 「지방공무원채용」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마감일 마감 시간대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오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수수료: 5,000원

마. 납부방법: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응시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 ‘교육행정 저소득’ 구분모집 외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경우에 해당

○ ‘교육행정 저소득’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는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아도 응시 원서가 접수됩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용 사진

○ 사진파일: 3.5cm×4.5cm(파일 100Kb 이하), JPG형식, 해상도 100dpi, 컬러 증명사진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시험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수험생 본인 얼굴 정면(상반신)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 응시표 출력 · 지참

○ 응시표는 **2021. 5. 24.(월) 10:00 ~ 2021. 6. 5.(토) 10:00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시험당일 반드시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 유의사항

○【수정, 취소】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접수 및 기존 원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하며, **취소는 2021. 4. 26.(월) 18:00**까지 가능합니다. **(단,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수수료 환불】응시수수료는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취소기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중복접수 불가】선발직렬 및 구분별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접수 확인】원서접수 후 응시원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접수번호가 기재되었으면 정상처리 된 것임)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 응시자 과실로 응시가 불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확인】 거주지 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보훈청 추천】 경력경쟁임용시험(시설관리 국가유공자 구분 모집) 응시는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원서접수 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를 접수하면 해당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PC환경】 운영체제 윈도우 7~10, 익스플로러 버전 7~11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 및 가산점 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가.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 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이 모두 해당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가산점 하나만 선택 • 취업지원 또는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가산점 적용은 매과목 40%이상 득점 시 적용
나.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집단위 10명 이상 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나. 취업지원 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 합격자는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산 합격자가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대상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하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아래 표에 제시한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table>
<tr><th rowspan="2">직군</th><th rowspan="2">직렬(직류)</th><th colspan="2">자격증</th><th rowspan="2">가산
비율</th><th rowspan="2">비고</th></tr>
<tr><th>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th><th>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th></tr>
<tr><td>행정</td><td>·교육행정</td><td>-</td><td>변호사</td><td>5%</td><td rowspan="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7조제2항 관련 [별표3] 참조 【첨부3】</td></tr>
<tr><td rowspan="2">기술</td><td rowspan="2">·공업(일반기계, 일반전기)
·보건
·시설(일반토목, 건축)</td><td colspan="2">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td><td>5%</td></tr>
<tr><td colspan="2">기능사</td><td>3%</td></tr>
</table>

※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3)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10% 또는 5%)을, 의사상자 등 대상의 경우 증서번호와 가산비율(5% 또는 3%)를 입력해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또는 증서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필기시험 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따라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 자격증 가산점수는 직렬별 가산점 자격증 1개만 인정됩니다.

○ 선택과목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 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자격증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적용직렬: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9. 장애인・저소득층 초과 합격제

가. 해당직렬: 교육행정(장애인), 교육행정(저소득층)

나. 방법

○ 필기시험에서 교육행정(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 처리하며,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한 인원의 67%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단, 필기시험 초과합격인원이 1명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 합격 조치)

10.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30%의 범위(단,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총득점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30%의 범위(단,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 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시설관리직렬의 경력증명서를 기한 내 미 제출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정결과는 다음의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1) 우수: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다. 최종합격자

1)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합니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합니다.

2)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합니다.

3)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라. 추가합격자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 - 시험안내 - 지방공무원 시험안내” 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거주지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지 배부 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함)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전화, PMP, MP3, 무선호출기, 태블릿 PC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스마트안경, 스마트시계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 통신장비, 전자기기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전원을 차단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5년간 정지**합니다.

○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 판독 점수를 원점수로 하며,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의 시간 안내나 시험실 내 시계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산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시계, 문자 송·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 시계 등은 시험시간 중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및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은 취소됩니다.

○ 우리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아래와 같이 전출이 제한됩니다.

-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임용된 날부터 3년간 타 시·도 등 전출 제한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임용된 날부터 4년간 타 시·도 등 전출 제한

12. 기타 사항

○ 시험 관련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첨부3】'장애인 응시자 편의 지원계획' 에 따라 신청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접수기간**: 2021. 4. 26.(월) 09:00 ~ 2021. 4. 30.(금) 18:00까지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이 공고문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시험안내 -지방공무원 시험안내")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 운영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장애인 편의 지원,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02-399-9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임용시험 시행 계획 1부

2.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1부

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1부

【첨부 1】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임용시험 시행 계획

1. 근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

2.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선발예정 인원

직종(계급)	직렬(직류)
	시설관리
일반직(9급)	15명

3. 시험 방법

가. 필기시험(제1·2차 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시험명	직렬 (직류)	필기시험과목	세부 내용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설관리	한국사, 사회	- 과목별 100점 만점 - 총40문항(과목별 20문항) - 4지택1형 - 시험시간: 40분(1문항당 1분)

○ 합격자 결정: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임용시험 응시 적격 여부를 서류를 통해 확인함

(관련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

나. 면접시험(제3차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다음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평정 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응시자격(보훈청 추천 대상자만 응시 가능)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라고 하여 모두 응시가능한 것은 아니며, 반드시 서울북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신규임용시험」 구분모집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만 응시 가능(추천 대상자 확인, 신청방법 등은 서울북부보훈지청(☎ 02-944-9215으로 문의)

나. 거주지 제한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자 중에서 서울북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 가능

①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자격(면허)증·경력제한

<table>
<tr><th>직렬(직류) 및 계급</th><th>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th></tr>
<tr><td>시설관리
9급</td><td>○ 아래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관리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관리관련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시설관리관련 분야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 시설관리관련 분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table>
<tr><th colspan="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th></tr>
<tr><td>기 능 장</td><td>전기</td></tr>
<tr><td>기 사</td><td>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기계분야), 조경</td></tr>
<tr><td>산업기사</td><td>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기계분야), 조경</td></tr>
<tr><td>기 능 사</td><td>전기, 기계정비, 조경</td></tr>
</table>
</td></tr>
</table>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의 국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등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라. 시험응시 대상자 선정방법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북부보훈지청으로 채용예정인원,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추천의뢰를 하면,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는 법령에 정해진 배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고, 우리교육청은 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원서접수 확인 및 시험시행

마. 기타 응시 자격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따름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1. 4. 19.(월) 09:00 ~ 2021. 4. 23.(금) 18:00

(취소기간: 2021. 4. 19.(월) 09:00 ~ 2021. 4. 26.(월) 18:00)

나. 접수방법

○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 서울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해당직렬에 응시원서 접수한 사람은 차후에 원서접수가 취소되며, 응시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으니 추천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원서접수

6. 기타 사항

가. 응시원서 미 접수 시 필기시험을 볼 수 없으므로, 서울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자들도 반드시 정해진 기일 내 인터넷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나.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 등은 반드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조

서식 1. 경력증명서 1부.

<서식>

경 력 증 명 서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증명사항	재 직 기 간		소속 및 직위(급)	담당업무내용	상근 및 비상근 여부 (비상근의 경우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

※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상근이란?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이상 정규 근무한 형태를 말함 (이외 시간제 근무자 등은 비상근으로 근무시간 합산을 통해 경력 산정)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 2】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1. 편의지원 제공 대상

가.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신체장애로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자

나.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응시자, 임신부

※ **공동출제 과목은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를 지원하지 않음**

※ **인사혁신처에서 위탁출제하는 과목 중 수학은 음성지원컴퓨터를 지원하지 않음**

- 점자문제지는 2017년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에 따라 제공합니다.

2. 편의지원 신청

가. 접수기간: 2021. 4. 26.(월) 09:00 ~ 4. 30.(금) 18:00까지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제출서류

1) 편의지원 신청서 1부(서식 1~5 참조)
2) 장애인증명서 1부(인터넷 민원24, 주소지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
3)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다.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응시원서는 원서접수기간 내 인터넷으로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편의지원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접수여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에 전화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02-399-9236)**

라.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특별시교육청 3층

총무과 인사팀 채용업무담당자 (우편번호 : 03178)

마.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2-399-9236)

3.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가.【참고】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는「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되는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단서(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

나. 시험시간 연장 편의지원은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다. 의사진단서(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인정됩니다.

※ 임신부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

※ 종합병원 여부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 [병원·약국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에는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편의제공 내용(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 등)의 필요한 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1)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아래 녹색 예시표 참고)

2)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아래 적색 예시표 참고)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아래 청색 예시표 참고)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신청할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발급내용 예시
시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기존 3급 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기존 4급 2호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상기인은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기존 3급2호)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기존 6급 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 0.3이하)	상기인은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기존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기존 4~6급)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기존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기타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지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시험시간 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상급)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 (소견서 불인정)**

마. 장애인 응시자가 제출한 '의사진단서(소견서)'를 검토하여 편의지원 신청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 기타 사유 등으로 편의지원을 신청하려면 편의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의지원 여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바. 다음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내용과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내용이 다를 경우
-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의 형식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 대필은 수험생 본인이 확대답안지에 기재하고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이 수험생 입회하에 답안지에 옮겨 적습니다.

아. 시험 진행 일정상 신청기간에 편의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시간 연장 편의지원은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차. 기타 의문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02-399-9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유형 및 정도			필기시험		비고
			편의지원 내용	제출서류	
지체장애	상지	공통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답안지 대필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4~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1~6급
뇌병변장애	공통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답안지 대필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 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	기존 4~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시각장애	공통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1.7배)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문제지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기존 1~2급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기존 3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1.5배)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3급 1,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문제지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기존 4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1.5배)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1.5배)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4,5급 1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이하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5급 2호, 6급

장애유형 및 정도		필기시험		비고
		편의지원 내용	제출서류	
청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심하지 않은 사람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2~6급
기타	특수 및 중복장애·일시적 신체장애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임신부	· 높낮이조절책상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1부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 시험중 화장실 사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 확대문제지: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 확대답안지: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
* 축소문제지: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하여 신청

※ 공동출제 과목은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를 지원하지 않음
※ 인사혁신처에서 위탁출제하는 과목 중 수학은 음성지원컴퓨터를 지원하지 않음
※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

<서식1>

편의지원 신청서

(뇌병변 · 상지 지체장애)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자택: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장애유형	편의지원 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O')**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상지지체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1.5배)		
	보조공학기기 지참		
	대필		
	휠체어 전용책상 ※ 휠체어사용자		

첨부　장애인증명서 1부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울특별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서식2>

편의지원 신청서

(하지 지체장애)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자택: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보행이 불편하여 휠체어 사용 등으로 인해 시험장 이동 및 시험실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장애유형	편의지원 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O')**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하지지체 장애	보조공학기기 지참		
	휠체어 전용책상 ※ 휠체어사용자		
	동행 보호자		

※ 동행 보호자의 시험실 입실은 제한됩니다. (별도 시험실 배정)

첨부 장애인증명서 1부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울특별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서식3>

편의지원 신청서

(시각장애)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자택: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장애유형	편의지원 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시각장애 (　　)	확대문제지		
	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1.7배)		
	시험시간 연장(1.5배)		
	보조공학기기 지참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첨부 1. 장애인증명서 1부
2. 의사진단서(해당자에 한함) 1부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울특별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서식4>

편의지원 신청서

(청각장애)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자택: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장애유형	편의지원 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청각장애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첨부　장애인증명서 1부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울특별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서식5>

편의지원 신청서

(기타장애 및 임신부)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자택: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　　)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편의지원 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첨부 1. 의사소견서 1부
2.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울특별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첨부 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 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7조제2항 관련)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교육행정	교육행정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시 설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 설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 비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의3)